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

- 50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축적과 연금화 실태

2024. 8. 19.

이규성 선임연구원

CONTENTS

I. 부족한 퇴직연금자산, 연금 대신 일시금 인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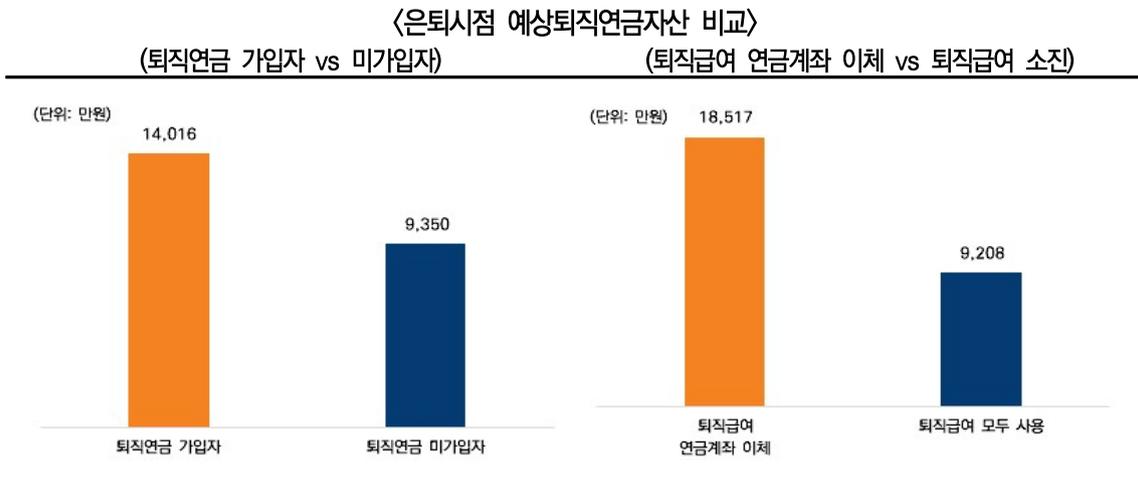
II. 퇴직연금자산 축적과 연금화를 저해하는 3요소

1. 퇴직연금 가입여부
2. 이직 경험
3.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경험

III. 시사점

< 요약 >

- 퇴직연금자산이 연금화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 축적이 선행되거나 하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연금자산 누수로 인해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은 10.4%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에서는 근로기간 동안 퇴직연금자산이 어떻게 누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설문결과에 따르면 3가지 요인이 퇴직연금의 축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가입여부]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은퇴시점의 연금자산 규모는 9,350만원으로 퇴직연금 가입자(1억 4,016만원)에 비해 67%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비중도 39%로 퇴직연금 가입자(61%)에 비해 낮음.
 - [근로자의 잦은 이직] 이직 경험자의 43.8%가 직전 퇴직한 직장으로부터 받은 퇴직급여를 모두 사용함. 이들의 은퇴시점 예상퇴직연금자산은 9,208만원으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응답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1억 8,517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됨.
 -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50대 직장인 중 35.3%가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 44.2%는 비자발적인 계기(퇴직연금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 임원승진 등)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비율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인식개선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의 IRP 이체 비율을 높여야 함. 아울러 비자발적인 계기로 발생하는 중간정산(중도인출)퇴직급여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I. 부족한 퇴직연금자산, 연금 대신 일시금 인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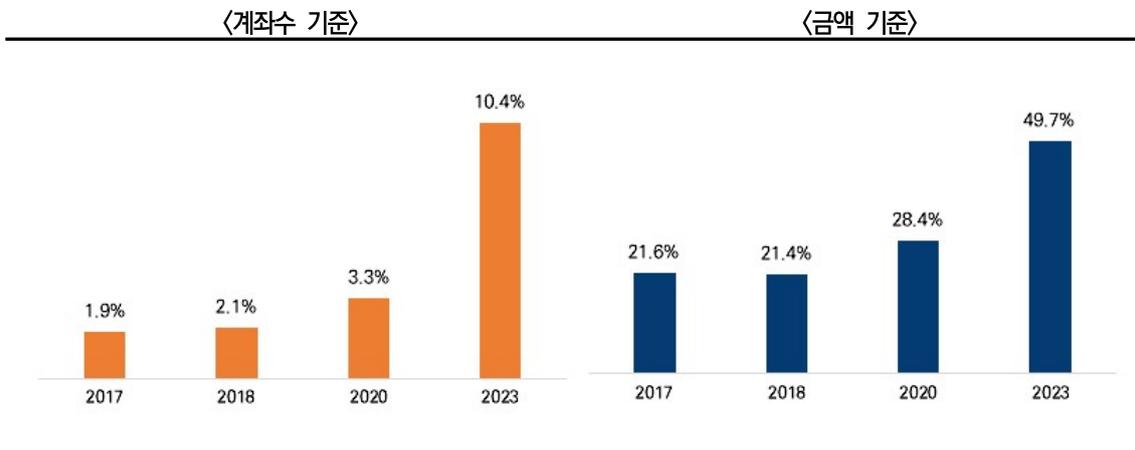
●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에 국내 도입됨. 국민연금(1988년)과 개인연금(1994년)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적립금이 연평균 15%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9~2023년) 주요 연금 적립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연금 10.1%, 개인연금 2.2%, 퇴직연금 15.0%임.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과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수는 2015년 30만 개에서 2022년 43만 개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가입자 수도 535만 명에서 695만 명으로 증가함.

● 퇴직연금 적립금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적립금 규모가 작은 경우 여전히 일시금 인출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에서(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10.4%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함. 금액기준으로는 총 수급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고 있음.
- 가입자가 보유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을수록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 3,976만원인 반면,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645만원임.

〈도표 1〉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각 연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결국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원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재직기간 동안 누수 없이 적립금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하지만,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연금자산이 축적되지 않으면서 연금화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퇴직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의무 이체하도록 함.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자마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IRP 의무이체 시행 시기 : 퇴직연금 가입자(2012.7월), 전체 근로자(2022.4월)
 - 2022년에 98만 4천명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했지만, 이를 넘어서는 98만 7천명이 IRP를 해지하였음. (해지환급액 12조원)
-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해 왔지만, 2022년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빠져나간 자산이 1.7조원이나 됨.
 -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 법정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 DB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불가

◎ 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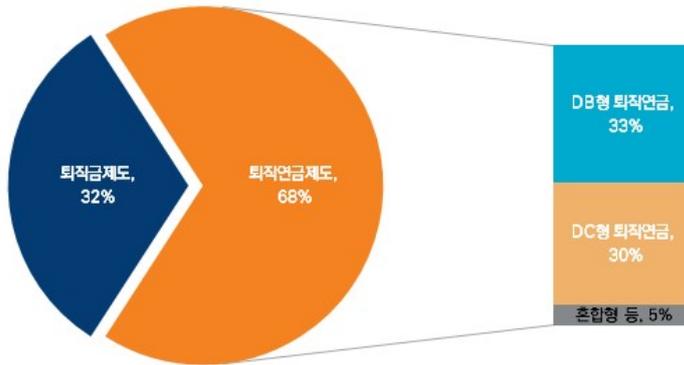
〈50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축적 실태와 연금화에 대한 인식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50대 직장인 1,000명 - 서울/수도권, 6개 광역시 및 세종시 거주자 -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조사 기간	2024년 6월 14일 ~ 2024년 8월 6일 (칸타코리아 실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모바일 조사
조사 내용	50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자산 축적에 대한 실태와 연금수령에 대한 인식 조사 - 가계의 자산, 소득, 등 재무 현황 - 연금축적단계의 경험(퇴직금 이전경험, 중도인출(중간정산)) - 연금수령에 대한 인식

〈참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50대 직장인의 퇴직급여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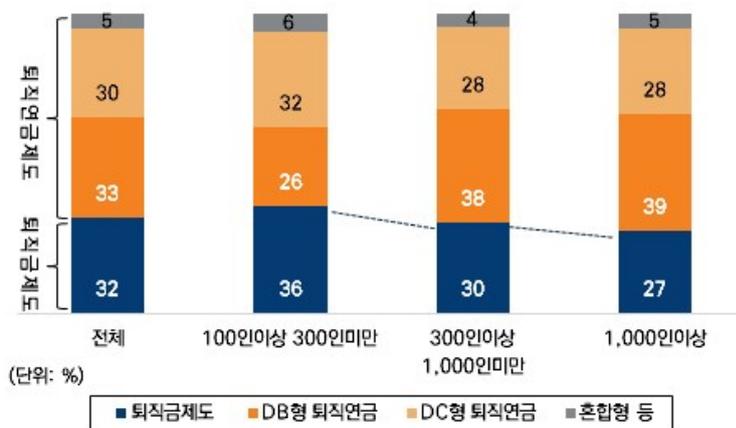
- ◎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68%, 미 가입자가 32%로 조사됨.
- 설문 응답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682명이며, 이 중 DB형 가입자는 334명, DC형 가입자는 296명, 혼합형 등 가입자는 52명으로 나타남.

〈설문에 응답한 50대 직장인의 퇴직급여제도 현황〉



-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퇴직연금 중에서 DB형 가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2명) 중 퇴직연금에 가입한 자는 270명(64%)인데 반해,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303명)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220명(72.6%)으로 조사됨.
-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303명) 중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119명(39.3%)인데 반해, 1,0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697명) 중에서는 215명(30.8%)만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 가입현황〉



II. 퇴직연금자산 축적과 연금화를 저해하는 3요소

1. 퇴직연금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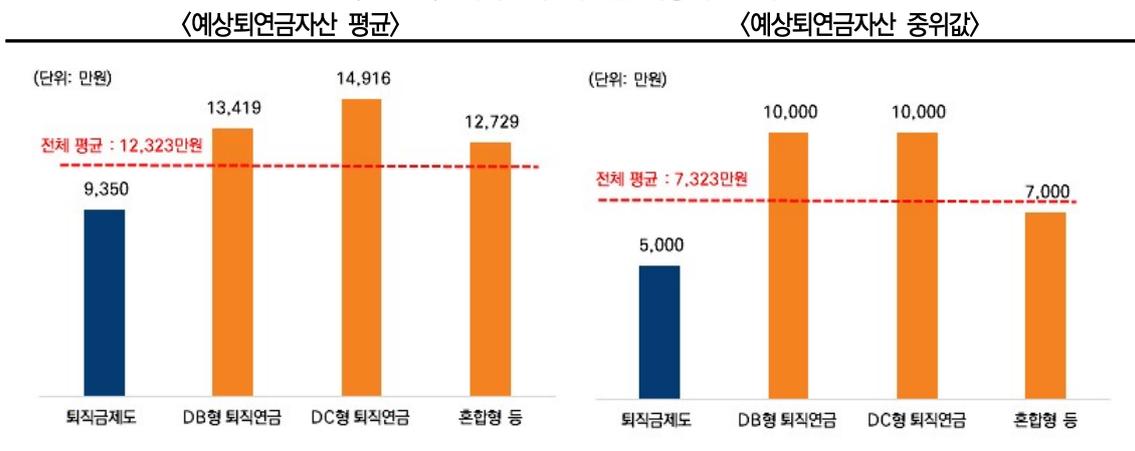
◎ 전체 설문 응답자는 은퇴시점의 예상퇴직연금자산*으로 평균 1억 2천만원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반해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평균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9,350만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함.

- 퇴직연금 가입자는 은퇴시점에 평균 1억 4,016만원을 퇴직연금자산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함.
- DC형 가입자가 1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퇴직연금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조사됨.
- 예상퇴직연금자산의 중위값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5천만원으로 퇴직연금가입자(1억원)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예상퇴직연금자산' 이란? >

근로자들은 은퇴시점이 되면 다니고 있던 직장의 퇴직급여와 그 동안 모았던 연금계좌 적립금을 합쳐 노후생활비로 활용함.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퇴직할 때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는 급여와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급여 중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것을 '예상퇴직연금자산'이라 정의하여 본 설문 분석에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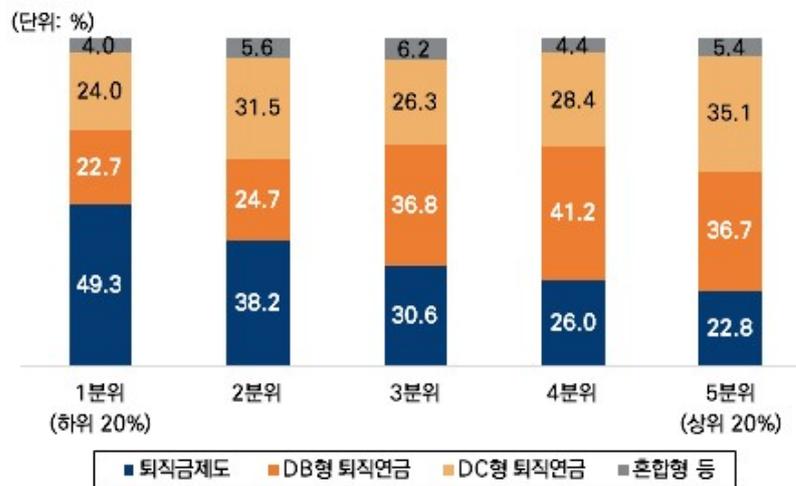
〈도표 2〉 퇴직급여 제도별 예상퇴연금자산



◎ 예상퇴직연금자산을 5분위로 나눠서 살펴보면*, 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1분위에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절반(49.3%)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예상퇴직연금자산 분위 구분: 1분위 2천만원 미만, 2분위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분위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분위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5분위 2억원 이상)
- 은퇴시점에 예상되는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1분위(하위 20%)에 속한 응답자 중 49.3%가 퇴직연금 미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4~5분위(상위 40%) 응답자 중 77.2%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도표 3〉 예상퇴직연금자산 분위별 퇴직급여 제도 현황



* 분위 구분: 1분위 2천만원 미만, 2분위 2천만원~5천만원, 3분위 5천만원~1억원, 4분위 1억원~2억원, 5분위 2억원 이상

◎ 예상퇴직연금자산 규모에 따라 응답자를 5분위로 나눠서 연금수령 의향을 살펴보면, 1~2분위에 속한 응답자 중에는 절반 이상이 일시금으로 인출하겠다고 한 반면, 4~5분위 응답자 중에는 60% 이상이 연금 수령을 선택함.

- 일시금 인출 의향 : 1분위 52%, 2분위 57%, 3분위 47%, 4분위 35%, 5분위 27%
- 연금 인출* 의향 : 1분위 48%, 2분위 42%, 3분위 53%, 4분위 65%, 5분위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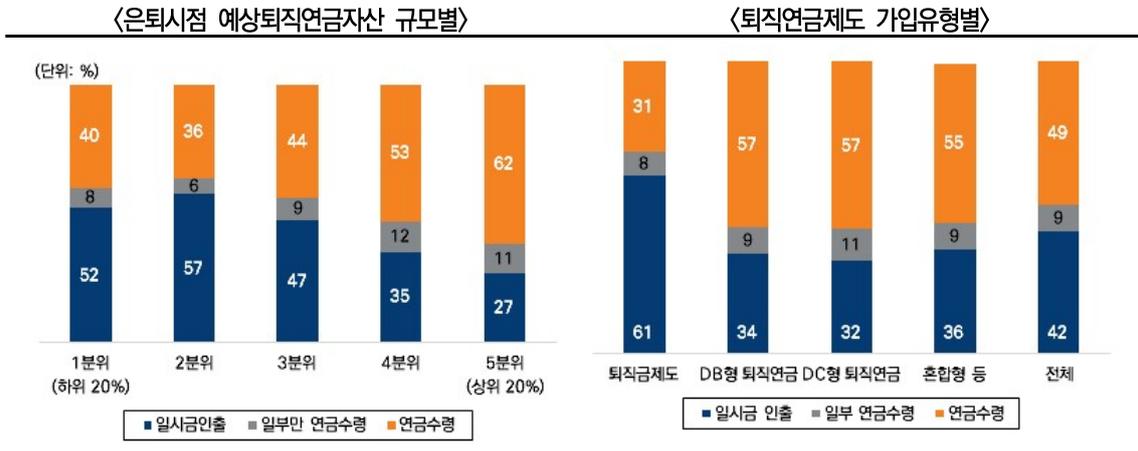
* 일부만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답한 사람 포함

◎ 퇴직급여 제도별로 구분해 연금수령 의향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미가입자 중에서 61%가 일시금으로 인출하겠다고 답하였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는 33%만 일시금으로 인출하겠다고 응답함.

- 일시금 인출 의향 : 퇴직금 61%, DB형 34%, DC형 32%, 혼합형 등 36%

- 연금 인출 의향 : 퇴직금 39%, DB형 66%, DC형 68%, 혼합형 등 64%
- 퇴직연금 가입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이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보다 더 많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수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됨.

〈도표 4〉 응답자의 연금수령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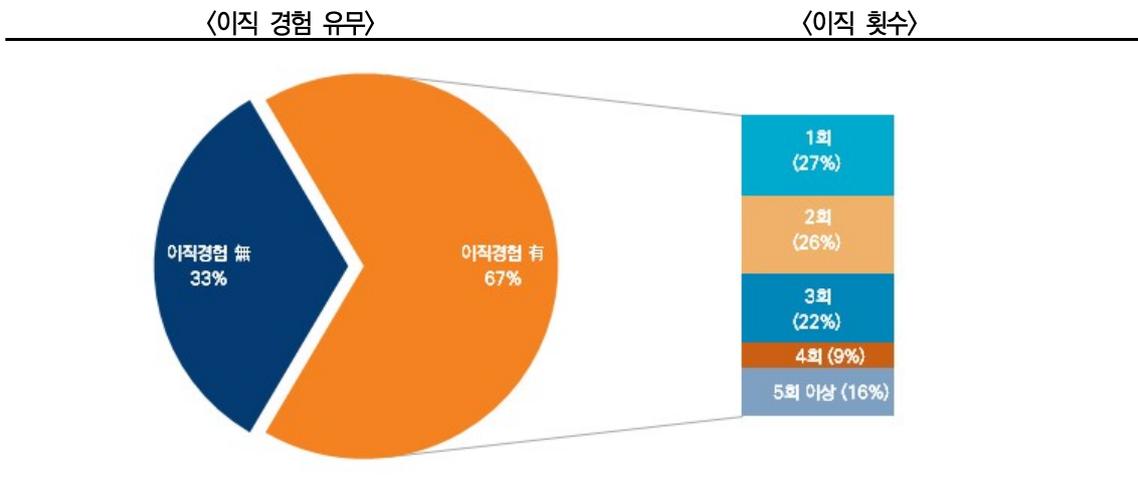
* 분위 구분: 1분위 2천만원 미만, 2분위 2천만원-5천만원, 3분위 5천만원-1억원, 4분위 1억원-2억원, 5분위 2억원 이상

2. 이직 경험

1) 이직 경험과 연금자산 축적

- 설문에 응답한 50대 직장인 중 67%가 과거 1회 이상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직 경험자의 평균 이직 횟수는 2.6회로 나타남.

〈도표 5〉 50대 직장인의 이직경험



- 이직 경험자(669명) 중에는 1회 경험자가 27%, 2회 경험자도 26%로 나타남. 직장을 5번 이상 옮겼다고 답한 응답자도 16%나 됐음.
-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의 이직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사업장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일수록 직장을 옮긴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됨.
- 이직 경험 비율 : 100~300인 77%, 300~1000인 68%, 1000명 이상 52%

● 이직이 예상퇴직연금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이직 횟수와 예상퇴직연금자산을 비교해서 분석함. 그 결과 이직 횟수가 많을수록 예상퇴직연금자산이 작게 나타남. 이는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급여가 연금자산으로 축적되지 않고 누수된 것으로 추정됨.

-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은퇴시점에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 퇴직연금자산(1억 902만원)규모는 이직 경험이 없는 자(1억 5,800만원)의 3분의 2수준으로 조사됨.

〈도표 6〉 이직 경험 및 횟수에 따른 예상퇴직연금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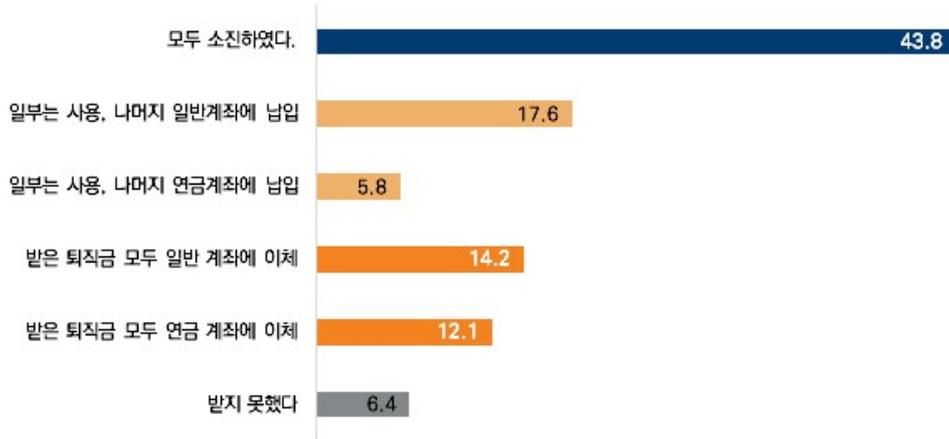
(단위 만원)	이직경험 有						이직경험 無 (331명)
	1회 (178명)	2회 (175명)	3회 (150명)	4회 (59명)	5회 이상 (107명)	소계 (669명)	
예상 퇴직연금 자산(평균)	13,603	12,226	8,400	9,447	8,638	10,902	15,800

2) 이직자의 퇴직급여 활용여부에 따른 연금자산 축적

● 이직 경험자(669명)에게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중 43.8%가 퇴직급여를 전부 써버렸다고 답함. 퇴직급여 전부를 연금계좌에 이체했다고 답한 사람은 12.1%에 불과함.

- 응답자의 17.6%는 직전 퇴직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를 일부 사용하고 잔여금을 일반계좌에 보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5.8%는 받은 퇴직급여를 일부 사용하고 잔여금을 연금계좌에 보관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26.3%는 직전 퇴직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를 온전히 모아두었지만, 응답자의 12.1%는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넣어둔 반면 응답자의 14.2%는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도표 7〉 직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 활용경로



* 이직 경험자 669명 대상

** 일반계좌는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말함.

◎ 예상퇴직연금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 전부를 연금계좌에 이체했다고 답한 사람이 보유한 자산은 평균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음.

-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전부 소진한 응답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 규모는 평균 9,208만원으로 전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응답자의 2분의 1수준에 그침.

〈도표 8〉 퇴직급여 활용별 응답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

(단위 만원)	이직경험 無 (331명)	이직을 경험한 응답자 중 직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경로(669명)					
		모두 소진 (293명)	일부 일반계좌에 보관 (118명)	일부 연금계좌에 보관 (39명)	전부 일반계좌에 보관 (95명)	전부 연금계좌에 보관 (81명)	퇴직금 마수령 (43명)
예상 퇴직연금자산 (평균)	15,800	9,208	11,389	11,567	10,817	18,517	6,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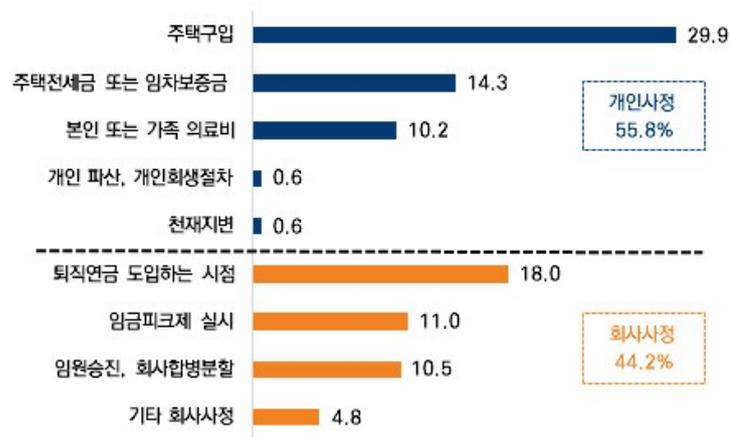
◎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했다고 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금 사용처를 물었더니, 주택구입과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람이 32.6%로 가장 많았고, 부채상환에 썼다는 사람도 26%나 됐음.

- 퇴직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구입(26.4%)’, ‘부채상환(26%)’, ‘자녀교육비(12.4%)’, ‘잘 모르겠음(11.3%)’순으로 나타남.

◎ 중간정산(중도인출) 경험자에게 인출 사유를 물었더니,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마련과 같이 개인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했다는 경우(55.8%)도 많았지만,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임금피크 적용과 같은 회사 내부 사정을 계기로 중간정산을 했다고 답한 경우도 44.2%나 됐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려고 퇴직급여를 인출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음. 다음 순서는 주택전세금과 임차보증금 마련(14.3%), 본인 또는 가족 의료비 마련(10.2%)가 차지함.
- 회사 내부 사정을 계기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한 경우(18.0%)가 가장 많았음. 다음 순서로는 임금피크제 적용(11.0%), 임원승진과 회사 합병분할(10.5%)이 차지함.

〈도표 11〉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계기



* 중간정산 및 인출 사유의 경우 복수문항을 100%로 환산하여 변형하였음.

Ⅲ. 시사점

● 이번에 실시한 50대 직장인을 대상한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자산 축적과 연금수령을 저해하는 3가지 요인이 드러남.

① 퇴직연금 미가입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 규모(9,360만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1억 4,916만원)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1억 3,419만원)에 한참 못 미침.
- 퇴직연금 가입자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사람이 33%인데 반해, 미가입자 중에는 61%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고 답함.

② 잦은 이직에 따른 연금자산 누수

- 이직 경험자 중 43.8%가 직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전부 써버렸다고 답했고,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한 사람은 12.1%에 불과함.
- 이직 경험자 중 14.2%는 이전 직장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함.

③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 50대 직장인 중 35%가 과거 1번 이상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한 경험이 있음.
-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과 같이 목돈이 필요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나 임금피크 적용 과정에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후자의 경우 계획에 없던 지출로 퇴직연금자산이 누수될 수 있음.

● 퇴직연금의 연금화 비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근로자의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제도적인 차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연금자산 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이직과 중간정산(중도인출)에 따른 퇴직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연금수령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퇴직연금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회사 재량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상황임.
-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30%(11년차 이후 40%)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개인적인 차원】** 근로자의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이직과 중간정산(중도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특히 퇴직연금 도입, 임금피크 적용, 임원 임용 등과 같은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가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현재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이체하도록 되어 있지만, 상당수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자마자 중도해지하고 있는 상황임.
- 50대 직장인 중에는 과거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연금저축,IRP)가 아닌 일반계좌에 보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따라서 퇴직자가 연금계좌가 가진 혜택(퇴직소득세감면,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지역건강보험료 절감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중간정산 때 원천징수 당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혜택도 받을 수 있음.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55]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도입, DB 적립금 운용을 리셋하다, 2022.4
- [56]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 2022.9
- [57]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 2022.11
- [58]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 2022.11
- [59]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 2022.11
- [60]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 2023.2
- [61]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2023.6
- [62]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일본 금융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2023.11
- [63]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 2023.12
- [64]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 2023.12
- [65]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은퇴 후 소득원과 주거에 대한 인식조사, 2023.12
- [66] 투자중개형ISA도입 성과와 과제, 2024.4

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